

◎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773호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공동주택가격 정정

1. 2005년~2022년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

- 가. 공시대상 : 2005년부터 2022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
- 나. 공시(가격) 기준일 :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
- 다. 공동주택 수 : 17호(다세대 주택)
- 라. 공시사항 :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, 명칭, 동·호수, 면적, 가격(내용생략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·군·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 통지)
- 마. 열람장소 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(www.realtyprice.kr)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(또는 읍·면·동) 민원실

2. 이의신청 방법

- 가.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년 6월 27일부터 2023년 7월 26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.
- 나. 이의신청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20조 별지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·군·구 민원실에 비치)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(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)에게 제출하여야 함.